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상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633 발의연월일: 2022. 9. 29.

발 의 자 : 윤상현 · 김학용 · 지성호

이종성 • 박정하 • 노용호

장동혁 · 이헌승 · 윤두현

구자근 • 전주혜 • 이양수

김성원 · 강민국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서 처벌하고 있지 않아,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되,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, 개인의기본권 및 공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항 및 안 제17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聽取하지"를 "聽取하거나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"로 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동의 없는 녹음 금지)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제1항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3條(通信 및 對話秘密의 보호)	第3條(通信 및 對話秘密의 보호)
① 누구든지 이 法과 刑事訴訟	①
法 또는 軍事法院法의 規定에	
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	
검열·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	
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	
나 公開되지 아니한 他人간의	
對話를 녹음 또는 鹽取하지 못	
한다. 다만, 다음 各號의 경우	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
에는 당해 法律이 정하는 바에	없이 대화를 녹음하지
의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17조의2(동의 없는 녹음 금지)
	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
	하여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
	없이 녹음한 대화자는 1년 이
	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
	의 벌금에 처한다.
	② 제1항의 행위가 공공의 이
	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
	<u>니한다.</u>